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
편집 : 문 화 공 보 관

전화 : 72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: 725-6090

제 869 호

1981.11.14

시 보

차 례

◎ 조	배		
제 1557 호 :	서울특별시제 1 회 지하철공채조례 폐지조례	3
제 1558 호 :	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 중개정조례	3
제 1559 호 :	서울특별시행정서사정원등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	4
◎ 규	칙		
제 1992 호 :	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시행규칙 중개정규칙	5
제 249 호 :	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	7
◎ 고	시		
제 400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시행허가	10
제 407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	11
제 408 호 :	도영재개발구역제 12 지구사업계획변경결정	12
제 409 호 :	도영제 12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	13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2064

제 410 호 :	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	13
제 412 호 :	재개발사업계획결정	14
제 413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시행허가 (사업기간연기)	19
제 414 호 :	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변경허가 (사업기간연기)	20

◎ 공 고

제 302 호 :	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결정을위한공람공고	20
제 303 호 :	이수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	21
제 307 호 :	K·S 표시허가취소공고	22
제 308 호 :	무교구역제 14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	22

◎ 사 령

◎ 통 지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제 1 회 지하철공채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1981년 11월 13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57 호

서울특별시 제 1 회 지하철
공채조례 폐지조례

서울특별시 제 1 회 지하철공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상수도 공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1981년 11월 13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58 호

서울특별시 상수도공채조례중
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상수도 공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상수도 공채원리금의 청구시효는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까지로 한다.

④상수도 공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상환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할 수 있다.

1.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급수 공사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취급기관의 강이 발급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경우
2. 매입대상이 아년자가 매입하였거나 소정의 매입금액을 초과 매입하여 그 취급기관의 강이 발급한 착오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매입원증을 반환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24-4 제 869 호 시

보 1981.11.14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서사 정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(인)
1981년 8월 13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559 호

서울특별시행정서사정원등에
관한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행정서사 정원등에 관
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
제 1 조 중 (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
같다) 를 삭제한다.

제 2 조 를 삭제한다.

제 6 조 제 1 항 중 "별표 2" 를 "별표 1"
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, "3 급
이상" 을 "5 급이상" 으로 한다.

제 7 조 중 "별표 3" 을 "별표 2" 로 한다.

제 3 조 내지 제 7 조 를 각각 제 2 조
내지 제 6 조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행정서사업무수수료액기준표

구 분	세 부 내 역	단 위	수 수 료 액	비 고
문안불요 서류	○양식화된 간단한 서류 ○사실증명, 권리 의무에 관한 서류	1매	600원이하	초과분은 1매 200원
문안필요 서류	○각서, 매도증서, 위임장, 유가 증권등 간단한 서류 ○이유서, 건의서, 신청서, 소원 장 재심청구서, 탄원서등 ○단체, 조합, 법인설립 관계서 류 및 법인설립 허가신청에 관한 서류 ○사업계획서등이 첨부되는 특 수한 재인허가 신청서등	1매 1건 1건 1건	900원이하 3,800이하 15,000이하 6,000이하	초과분은 1매 300원 매수에 관계없이 완결 된 것은 1건 으로함. " "

구분	세부내역	단위	수수료액	비고
도면	○ 간단한 도면	1매	800 이하	
	○ 상세한 도면 (구조도, 구적도등)	1매	500 이하	
외국어	○ 외국어로 서류작성 ○ 외국어 번역	국한문 작성 취하기준액의 3 배 이내 매년 시예산편성기준액의 범위이 내		
서류제출 대행료	○ 서류제출		1,800 이하	단 교통비 숙박 비등 설비가 소요되는 경우 에는 그 실비 를 가산할 수 있음.
<p>○ 용지의 규격은 16 절지물 원칙으로 하되, 규격이 정하여진 서식은 그 규격에 의한다.</p> <p>○ 상기사항 이외의 사항은 유사사항을 준용한다.</p>	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규 칙</div>		<p>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 8 조중 "서식 (제 1-6 호)" 를 "서식 (제 1-7 호)" 로 하고, 서 식 제 7 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 다.</p>		
<p>서울특별시 상수도공채조배시행규 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 1981년 11월 13일</p>		부 칙		
<p>◎ 서울특별시 규칙제 1922 호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배시행 규칙중 개정규칙</p>		<p>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.</p>		
<p>서울특별시 상수도 공채조배 시행</p>				

<제 7 호 서식>

미 사 용
상수도공채매입필증() 사실증명서
착오매입

금

구 분	권 증 별	매 입 필 증 명 서 번 호	비 고
성 명	5,000원권		
용 도	10,000원권		
징 구 기 관	50,000원권		
매 출 점	100,000원권		
발 행 일	500,000원권		
상 환 일	1,000,000원권		
	계		

위 상수도 공채 매입필증(미 사 용)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매 입 자 성 명

①

19 년 월 일

위 사실을 확인함.

징구기관명

②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1. 11. 12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구본석

◎ 교육규칙 제 249 호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(초등교육과) 제 1 항중 "인사담당장학관" 다음에 "과학교육담당장학관"을 삽입하고, 동 조 제 2 항중 "장학담당장학관과 인사담당장학관"을 "각 담당장학관"으로 하며, 동 조 제 5 항을 동 조 제 6 항으로 하고, 동 조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과학담당장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과학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도
2. 기초과학육성에 관한 사항
3. 과학실험학교의 운영지도
4. 기타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사항

제 5 조 (중등교육과) 제 1 항중 "생활지도 담당장학관" 다음에 "실업교육담당장학관, 공업교육담당장학관"을 삽입하고, 동 조 제 2 항중 "장학담당장학관, 인사담당장학관, 생활지도담당장학관"을 "각담당장학관"으로 하며, 동 조 제 4 항제 1 호중 "중등학교교원", 다음에 "(야간특별학급을 포함한다. 본 항에서 이하 같다)"를 삽입하고, 동 조 제 7 항중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 항을 제 9 항으로 하고 동 조 제 6 항제 4 호 및 제 5 호중 "(실업제학교를 제외한다)"를 삭제하여 이를 제 8 항으로 한다.

3. 사립중등학교(산업체부설학교, 야간특별학급, 기술학교,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)의 교원관(학력평가교사 포함) 제 5 조에 제 6 항 및 제 7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실업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실업제(공업계는제외)학교, 각종학교 포함)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
2. 제 1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 지도
3. 제 1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

<p>실습 및 실기교육지도</p> <p>4. 제 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설비의 운용지도</p> <p>5. 제 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</p> <p>6. 제 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생 취업지도</p> <p>7. 학생실기 경진대회 업무</p> <p>8. 지역개발교육등 새마을교육에 관한사항</p> <p>⑦공업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공업교육제 (기술학교, 고등기술학교 포함)의 교육과정운영 지도</p> <p>2. 제 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 지도</p> <p>3. 제 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용 설비의 운용지도</p> <p>4. 제 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실험실습 및 실기교육지도</p> <p>5. 제 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</p> <p>6.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과 졸업생 취업지도</p> <p>7. 산업체 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과 장학지도 및 학생 입·퇴학 업무</p> <p>8. 각종 의원기자재의 관리, 지도</p> <p>9.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확인</p> <p>제 6조 (산업교육과)를 삭제한다.</p>	<p>제 7조 (사회교육과)를 제 6조 (사회교육과)로 하여 동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 6조 (사회교육과) ①사회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제, 공익법인제, 청소년담당장학관, 체육담당장학관 및 보건제를 둔다.</p> <p>②사회교육제장과 공익법인제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, 청소년담당장학관과 체육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보건제장은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.</p> <p>③사회교육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공공도서관의 설치, 폐지 및 지도 감독</p> <p>2. 사설강습소의 설치, 폐지 및 지도 감독</p> <p>3.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</p> <p>4. 과 서무 및 기타 다른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</p> <p>④공익법인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옥영 또는 교회를 위한 법인 및 단체의 설립, 폐지 및 지도 감독</p>
--	---

2. 공민학교,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, 폐지 (법인의 설립, 폐지 포함) 및 지도 감독

3.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

4. 기타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

⑤ 청소년담당장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청소년교육시설의 설치, 폐지 및 지도 감독

2. 공민학교,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

3. 제 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지도 및 학생 생활 지도

4. 청소년 지도 및 국제교류

⑥ 체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체육교육 (체육중, 고등학교를 포함한다)의 장학 지도

2. 체육교사의 인사관리

3. 체육단체, 체육도장의 설립, 폐지 및 지도 감독

4.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

5.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

⑦ 보건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각급학교의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

2. 양호교사의 인사관리

3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4. 학생교원의 신체검사

5. 학교 건강관리소의 지도 감독

제 8 조 (체육과) 를 삭제한다.

제 9 조 (관리과) 를 제 7 조로 한다.

제 10 조 (재무과) 를 제 8 조로 하되,

동조 제 1 항중 "세입계" 다음에

"교지조성계 및 관제계" 를 삽입

하고, 동 조에 제 5 항 및 제 6 항을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교지조성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학교용지의 조성 및 관측에 관한 업무

2. 국유재산의 양수, 차입 및 매수

3. 토지 수용 업무

⑥ 관제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재산의 처분 및 보관

2. 재산의 용도 폐지 및 변경

3. 방재에 관한 사항

4. 재산대장 및 제도면과 공부 관리

5.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

6. 재산세일에 관한 제약

제 11 조 (관제과) 를 삭제한다.

제 12 조 (시설과) 를 제 9 조로 하되

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9 조 (시설과) ① 시설과의 사무를

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기획과, 설계

제, 건축 1제, 건축 2제, 토목제 및 설비제를 둔다.

②시설기획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설계제장, 건축 1제장 및 건축 2제장은 지방건축사차로, 토목제장은 지방토목기차로, 설비제장은 지방전기기차 또는 지방기계기차로 보한다.

③시설기획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각종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
2. 관급차재의 수급
3. 파서무 및 다른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④설계제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각종시설(토목공사제외)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
2. 각종시설(토목공사제외)의 설계 검사 및 지도

⑤건축 1제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국민학교 공사(토목공사제외)의 설계 및 건축감독
2. 학교육성회 시설공사(토목공사제외)의 지도

⑥건축 2제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각종공사(토목공사 및 국민학교공사제외)의 설계 및 건축 감독

⑦토목제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각종 토목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
2. 각종 토목공사의 설계검사 및 지도
3. 각종토목공사의 설계 및 공사 감독
4. 학교육성회 토목공사의 지도와 감독

⑧설비제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각종설비와 설계 및 공사지도와 감독
2. 학교 실험실습비의 시설지도
3.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설비 및 교구설비 계획의 수립과 조정

부 칙 (81.11.12)

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서울특별시고시제 400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 변경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269호(80.7.24)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조, 동법시행령제 25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호(79.12.10)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학교)변경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등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.

1981. 11. 5

서울특별시청

<p>가. 사업시행지 변경전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66-3 외 5필 변경후 : 변경없음. 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다. 사업규모 및 면적 : 변경없음. 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협교육감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전 1) 착수년월일 :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2) 준공예정일 : 1981.7.30 변경후 1) 착수년월일 : 변경없음. 2) 준공예정일 : 1982.11.30 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람.</p> <p>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407 호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42 호 (81.7.</p>	<p>2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된 서울구정릉동 861-1번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 과와 서울구정릉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1981. 11. 10 서울특별시장</p> <p>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-1 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 : 국민대학교) 명 칭 : 국민대학교 교사 증축 다. 사업시행규모 (1) 시행면적 : 102,523 평방미터 (2) 건축계획</p>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당 초</th> <th>변 경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건축면적</td> <td>2,294.92 평방미터</td> <td>2,429.92 평방미터</td> </tr> <tr> <td>연면적</td> <td>6,375.07 평방미터</td> <td>10,914.67 평방미터</td> </tr> <tr> <td>층 수</td> <td>지하 1층, 지상 2층</td> <td>지하 1층, 지상 5층</td> </tr> <tr> <td>구조</td> <td>철근콘크리트, 라멘조</td> <td>철근콘크리트, 라멘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당 초	변 경	건축면적	2,294.92 평방미터	2,429.92 평방미터	연면적	6,375.07 평방미터	10,914.67 평방미터	층 수	지하 1층, 지상 2층	지하 1층, 지상 5층	구조	철근콘크리트, 라멘조	철근콘크리트, 라멘조	
구 분	당 초	변 경														
건축면적	2,294.92 평방미터	2,429.92 평방미터														
연면적	6,375.07 평방미터	10,914.67 평방미터														
층 수	지하 1층, 지상 2층	지하 1층, 지상 5층														
구조	철근콘크리트, 라멘조	철근콘크리트, 라멘조														
<p>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-1</p>	<p>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서성택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</p>															

(1) 착수년월일 : 허가일로부터 15
일이내

(2) 준공예정일 : 1982.12.30

바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별첨
(도면생략)

사. 사용할토지 : 서울특별시성북구
정릉동 861-1 (지목 : 학교용지)

아. 토지소유자 : 학교법인국민학원
(수용할토지없음)

구역지정되고, 동고시제 329 호 (81. 8.27) 로 사업계획결정된 도영재개발구역 제 12 지구 사업계획을 도시
재개발법제 5 조 및 동시행령제 5 조
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
정하고 고시하며 관계서류를 서울특
별시청 건축국재개발 1 과 및 해당구
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관계인에
게 보인다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08 호

도영재개발구역제 12 지구
사업계획변경결정

1981.11.10

1. 건설부고시제 367 호 (73.9.6) 로

서울특별시장

가. 변경내용 (건축계획변경)

구	분	당	조	변	경	비	교
대	지	면	적	3,685.2	㎡	3,685.2	㎡
건	축	면	적	1,599.86	㎡	-	
연	면	적	24,189,628	㎡	-		
건	폐	율	43.41 %		44 %		
용	적	율	545 %		433 %		
높	이		지상 10 층, 지하 3 층	지상 10 층, 지하 3 층			
용	도		업무시설, 공동주택	업무시설, 공동주택			
				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			
배	열		별첨도면	별첨도면			

*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구분	대지면적	건폐율	용적율	높이	주용도	비고
2	12,886 ㎡	40 %이하	670 %이하	-	-	건축위심의에 따라
3	3,876 "	"	"	-	-	별도작성
4	7,038 "	"	"	-	-	
5	4,095 "	"	"	18 층이하	업무 및 판매시설	

구분	위치	면적
회현 공공공지	중구회현동 1가 28 - 9 일대 " 2가 78 " " 2가 6 - 11 "	1,246 ㎡

구분	위치	면적
회현 녹지	중구회현동 1가 63 번지일대	225 ㎡

구분	위치	면적
회현 주차장	중구회현동 1가 37-2 일대	2,582 ㎡

노선명	노선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중로 1류	28	20 m	240 m	회현동 1가 퇴계로 노선 (대로 1류 4)	회현동 1가 남산말	회현동 1가 11-2 ~ 회현동 1가 59 위치변경 길이 = 175 m
중로 2류	207	15 m	145 m	회현동 1가 63-2	회현동 2가 66-1 (광로 60)	

노선명	노선 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중로 2류	230	15 "	125 "	회현동 1가 55-1	회현동 2가 62-2 (광로 60)	
중로 2류	231	15 "	85 "	회현동 2가 26-2 (광로 50)	회현동 2가 18-1	
중로 2류	208	15 "	165 "	회현동 2가 8-4 (대로 1류 4)	회현동 2가 18-1	

나.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

구 분	위 치	면 적	비 고
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	회현동 1가 6-2 및 회현동 2가 63-10 번지일대	4,870 ㎡	회현재개발구역

2. 마포로주변구역 재개발사업계획 결정

가. 사업계획 결정조서

1) 녹지시설 결정조서

구 분	위 치	면 적	비 고
계		7,192 ㎡	
공 원 녹 지	공덕동 236-26 번지일대	702 "	
가현제 1 녹지	아현동 606-6	1,332 "	
" 2 "	" 602 "	731 "	
" 3 "	" 602 "	510 "	
" 4 "	" 600-5 "	698 "	
" 5 "	" 778 "	434 "	
충정로제 2 녹지	충정로 3가 158-10 번지일대	479 "	
미군제 1 녹지	미군동 212-17 "	598 "	
중 립 녹 지	중립동 156-3 "	900 "	
충정로제 1 녹지	충정로 3가 227-5 "	536 "	
미군제 2 녹지	미군동 320 "	272 "	

2) 도로서설 결정조서						
노선명	노선번호	폭원	연장	기	점	비고
소로 1류	1	10m	611	공덕동 362-72	공덕동 140-11	
"	2	10m	38	" 382-4	" 384-30	
"	3	10m	39	" 298-16	" 379-1	
"	4	10m	39	" 293	" 269-3	
"	5	10m	38	" 152-1	" 232-2	
"	6	10m	39	" 143-10	" 174-5	
"	7	10m	39	" 140-10	" 140-13	
중로 3류		12m	209	" 254-57	" 253-17	
소로 1류	8	10m	38	" 254-24	" 254-27	
"	9	10m	37	" 252-23	" 252-68	
"	10	10m	230	" 252-68	" 240-8	
중로 3류		12m	37	" 252-10	" 252-65	
소로 1류	11	10m	39	" 236-25	" 236-1	
"	12	10m	56	아현동 617-49	아현동 617-53	
"	13	10m	243	" 614-22	" 613-1	
"	14	10m	290	" 435-16	" 626-10	
"	15	10m	45	" 437-5	" 424-29	
"	16	10m	275	충정로 3가 80-1	충정로 3가 143-6	
"	17	10m	154	" 2가 189-11	" 2가 178	
"	18	10m	137	" 99-21	" " 86	
"	19	10m	283	" 3가 367-2	" 3가 240-15	
"	20	10m	32	" 289	" 360-2	
"	21	10m	350	" 323	합동 37-1	
"	22	10m	32	" 293-2	충정로 3가 286-5	
"	23	10m	212	충립동 580	충립동 445-3	

3) 지구별 결정조서				면적	비고
지구명	위	치			
제 2 - 1 지구	마포구공덕동 396-67 번지일대			5,743 m ²	
제 2 - 2 "	"	381	"	2,113 "	
제 2 - 3 "	"	297	"	3,450 "	
제 2 - 4 "	"	275	"	3,600 "	
제 2 - 5 "	"	167	"	2,828 "	
제 2 - 6 "	"	134-5	"	3,920 "	
제 2 - 7 "	"	254-11	"	3,500 "	
제 2 - 8 "	"	253-24	"	3,906 "	
제 2 - 9 "	"	252-12	"	2,973 "	
제 2 - 10 "	"	237-8	"	3,841 "	
제 3 - 1 "	"	아현동 617-1	"	5,958 "	
제 3 - 2 "	"	614-19	"	3,328 "	
제 3 - 3 "	"	613-10	"	5,098 "	
제 3 - 4 "	"	612-1	"	3,044 "	
제 3 - 5 "	"	436-1	"	3,063 "	
제 3 - 6 "	"	429-12	"	2,924 "	
제 3 - 7 "	"	606-33	"	1,860 "	
제 3 - 8 "	"	602-3	"	791 "	
제 4 - 1 "	"	883 번지일대		3,927 "	
제 4 - 2 "	"	784	"	2,771 "	
제 4 - 3 "	충정로 3가 63-1 일대			5,405 "	
제 4 - 4 "	"	96-2	"	6,705 "	
제 4 - 5 "	"	190 번지일대		2,805 "	
제 4 - 6 "	"	164-5	"	3,912 "	
제 4 - 7 "	"	91	"	5,455 "	
제 4 - 8 "	미근동	218		3,677 "	
제 4 - 9 "	"	9		2,020 "	
제 5 - 1 "	충정로 3가 240-14 번지일대			2,623 "	
제 5 - 2 "	"	265	"	3,549 "	

지구명	위치	면적	비고
제 5 - 3 지구	충정로 3 가 360-3 번지일대	1,971 평	
제 5 - 4 "	" 398-6	3,748 "	
제 5 - 5 "	" 318 "	2,815 "	
제 5 - 6 "	" 292-3 "	5,702 "	
제 5 - 7 "	합동 33-10 "	2,735 "	
제 5 - 8 "	" 21-1 "	3,775 "	
제 5 - 9 "	순화동 6-10 "	6,174 "	
제 5 - 10 "	중립동 624 "	4,229 "	
제 5 - 11 "	" 150-106 "	1,035 "	
제 5 - 12 "	" 511 "	5,720 "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13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시행
허가 (사업기간연기)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360 호 (80.10.30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이 가된 성동구 자양동 220-124 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 호 (79.12.10)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11. 13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의 시행지 : 성동구 자양동 220-124 호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3. 사업시행면적 : 10,489 평
4. 사업시행자,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-1 유승윤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- 변경전
 - 가. 사업의 착수일 : 1980.11.4
 - 나. 준공예정일 : 1981.10.31
 - 변경후
 - 가. 착수일 : 변경없음
 - 나. 준공예정일 : 1982.10.31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람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14 호

도시계획사업(시장), 시행변경
허가(사업기간 연주)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57 호(81.3.4)로 도시계획사업(시장) 시행허가된 성동구 용답동 121 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,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9.12.10)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시장) 시행변경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11. 13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의 시행지: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21 번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시장)
3. 사업의 규모 및 면적
 - 면적: 3,888.6 ㎡
 - 규모: 3 층건물 1 동(1,992.16 ㎡)
4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19-160 김영삼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- 변경전

가. 착수년월일: 1981.3.9

나. 준공예정일: 1981.10.31

○ 변경후

가. 착수일: 변경없음.

나. 준공예정일: 1982.10.31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람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02 호

재개발사업시행인가 변경결정을
위한 공람 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332 호(79.7.24)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울지로 2 가 제 10-1 지구 재개발사업시행자 내외총업주 대표이사 김성우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변경 요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제 2 항에 의거 변경코자 동법 제 15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한다.
2.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 및 개별통지 누락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갈음한다.

1981. 11. 10

서울특별시장

가. 변경내용			
구 분	사업시행인가	금 회 변 경	비 고
시행면적	4,287.1 ㎡	4,287.1 ㎡	변 경 없 음
대지면적	3,999.4 ㎡	3,999.4 ㎡	"
건축면적	1,944 ㎡	1,594.3 ㎡	감 349.7 ㎡
연 면 적	35,465. ㎡	33,514 ㎡	감 1,931 ㎡
진 폐 율	48.6 %	39.9 %	감 8.7 %
용 적 율	663 %	634.5 %	감 28.5 %
층 수	지상 13 층, 지하 4 층	지상 15 층, 지하 3 층	지상 2 층 증가 지하 1 층 감소
용 노	사 무 실	업무 및 판매시설	지하 1 층 용도변경
시행기간	1979. 7.24- 1982.12.31 까지	1979. 7.24- 1984.12.31	변 경 없 음

<p>나. 변경사유 : 주차장법명 제정에 따른 건축계획 조정으로 인한 면적 증감</p> <p>다. 공람기간 : 1981.11.10-1981.12.9 (30일간)</p> <p>라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건축국제계 발1과 (720-4627) 내외공업(주) (968-5753)</p> 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03 호</p> <p>이수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</p> <p>1. 서울특별시공고 제 100 호 (81.4.10)로 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인</p>	<p>이수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시행자일 이수추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도서와 같이 환지계획인가 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</p> <p>2. 환지계획 관계도서는 이수추가 토지구획정리조합 및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 11. 1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-	---

가. 사업명 : 이수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

나. 시행지구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537일대

다. 환지계획인가면적 : 76,608㎡ (23,174평) (관계도서생략)
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307 호

KS 표시허가취소 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허가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81. 11. .

서울특별시장

- 1. 허가번호 1353
- 2. 허가일자 76.11.17
- 3. 제조업체명 신진밸브공업(주)
- 4. 대표자 박찬언
- 5. 소재지 구토구가리봉동 444
- 6. 규격번호 KSB 2332
- 7. 품명 수도용 제스밸브
- 8. 종류및등급 500/이하
- 9. 취소사유 자진반납
- 10. 취소일자 1981.11.9.
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308 호

무교구역제 14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- 1. 건설부고시 제 367 호 (73.9.6) 로 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 329 호 (81.8.27) 로 사업계획결정된 무교구역 제 14 지구에 대하여 동지구내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사장 문태갑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신청이 있어 동법제 15 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자 공고한다.
- 2. 관계서류는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고 공람에 공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할것이 나 미수행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1. 11. 12.

서울특별시장

공 램 개 요

- 1) 사업 명 칭 : 무교구역 제 14 지구 재개발사업
- 2) 시행위치 : 중구 태평로 1가 18. 19-3.25. 25-2. 31-2. 31-3 (6필지)

3) 시행면적 : 7,435.9 ㎡ (2,249.4평)

○ 대지면적 : 6,728.9 ㎡
(2,035.5 평)

○ 공공용지시설면적 : 707 ㎡,
(213.9 평)

4) 건축계획 (규모 및 층별용도는
건축허가로 확정한다)

○ 건축면적 : 약 2,130 ㎡ (건폐율 :
32 %)

○ 연 면 적 : 약 54,500 ㎡
(용 적 율 : 54.0 %)

○ 용 도 : 업무시설, 판매시설

○ 층 수 : 지상 18 층, 지하 4 층

5) 시행예정자

중구 태평로 1가 31-3

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사장 문태갑

6)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 : 별첨
(생략)

7) 시행기간 : 1981.12. . . -
1984.10.15

8) 공람기간 : 1981.11.12. - 1981.
12.11 (30일간)

9)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재개발과 (720-4627)

사 령

◎ 1981년 11월 10일자 령 447 호

봉 제 담 당 관 김 한 영
지방행정사무관

정부합동민원실 파견근무를 명함.
(81.11.15-82.11.14)

◎ 1981년 11월 11일자 령 449 호

중구시민국장 권 오 복
지방서기관

내무국 근무를 명함.

◎ 1981년 11월 12일자 령 450 호

사회지도담당관 조 기 석
지방행정주사

원래 의하여 근무 명함.

서울특별시 시장

등 지

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

사건 81-4

1. 소청청구의 취지 : 파면처분취소청구

2. 소청인성명 : 조관승

소속 : 관악구 봉천 2동

직명 : 지방행정주사보

주거 : 서울관악구봉천동 635-
561

소 : 서울관악구봉천 2동 산
94-1 (9통 2반)

3. 피소청인 : 서울특별시 시장 (구로구
청장)

피소청인이 1981.1.10 소청인에
대하여한 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

인으로부터 동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당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주 문

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.

결정일 : 81.7.10

통지 및 반송 : 81.8.26 ~ 81.10.

재통지일 : 81.11.12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

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

사건 81-41

1. 소청청구의 취지 : 파면처분취소청구

2. 소청인성명 : 양윤호

소속 : 전구로구 독산3동

직명 : 지방행정서기보

주소 : 구로구 독산동 47-21 (24/2)

3. 피 소 청 인 : 서울특별시장 (구로구청장 처분)

피소청인이 1981.6.19 소청인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으로부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당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주 문

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.

결정일 1981.10.22

통지일 1981.11.12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

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

사건 81-47

1. 소청청구의 취지 : 해임처분취소청구

2. 소청인성명 : 서영현

소속 : 전강서구 세무 2과

직명 : 지방행정서기

주소 :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70 -1 (우신아파트 9동 512호)

3. 피 소 청 인 : 서울특별시장 (강서구청장 처분)

피소청인이 1981.7.8 소청인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으로부터 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당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주 문

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.

(결정일 : 1981.10.22,

통지일 : 1981.11.12)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